

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8467(본소), 2015나8474(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5. 10. 29.

판결 선고 2015. 11. 26.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5. 20. 선고 2014가단6219(본소),
2014가단10379(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에서 퇴거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7. 5. 21. 접수 제110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법원 1981. 8. 29. 접수 제391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B

○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

제1심 판결 중 피고 C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사공민, 판사 강태호

목 록

1. 김천시 K 대 15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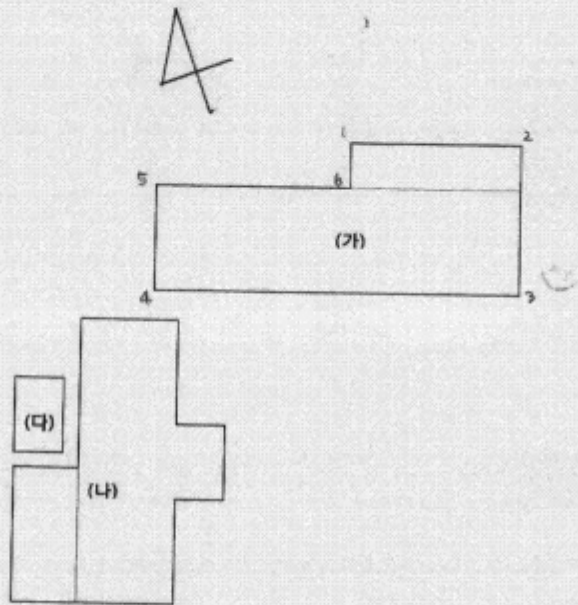
2. 김천시 K

시멘트 및 흙벽돌조 스테이지붕 단층 주택 69㎡

시멘트 및 흙벽돌조 스테이지붕 단층 주택 72㎡

부속건물 화장실 5㎡, 끝.

별지 도면



김천시 대 526제곱미터 위 지상

1. (가)

시멘트 및 흙벽돌조 스텔트 지붕 단층 주택 약 21평(69㎡)

2. (나)

시멘트 및 흙벽돌조 스텔트 지붕 단층 주택 약 22평 (72㎡)

3. (다)